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35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민형배 · 주철현 · 정준호
이개호 · 양부남 · 박지원
최혁진 · 김우영 · 이성운
문정복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허위사실 게시나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 금지 장소, 규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개수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당이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해도 이를 제지할 실효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함께, 가짜뉴스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게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의 의견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8호라목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 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 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 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 7. (생략)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 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 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u><신설></u>	제8조(적용 배제) ①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u> <u>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u> <u>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지</u> <u>아니할 것</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
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
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
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
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
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
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
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이 경우 제8조제1항제8호
라목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미리 관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